보건복지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2. 29.(목)		
담당 부서	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	책임자	과장	유보영	(044-202-3540)
		담당자	사무관	정미희	(044-202-3551)

2023년도 「보육사업안내」 지침 개정

- 대체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고, 어린이집의 다양한 행사·활동 장려-

□ **보건복지부**는 12월 29일(목)에 어린이집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**‘2023년도 보육사업안내’ 지침**을 **개정**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은 **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**하고,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**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**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□ 개정된 「2023년도 보육사업안내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〈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〉

○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되는 **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**하였다.

- **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**에 **‘보육교사의 퇴직’ 을 추가**하여 연간 **최대 5일간**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또한,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**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**하여 어린이집의 **보육 공백을 방지**하고 **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**할 수 있게 하였다.

○ 아울러, 지자체별로 **“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”를 제정하도록 권고**하여 **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**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〈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〉

○ 어린이집에서 **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**을 반영한 **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**될 수 있도록 **부모**로부터 **수납**할 수 있는 **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**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현재, 부모부담 행사비는 **입학, 졸업,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***하고 있으나, **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**을 **자율적**으로 **정할 수 있도록 개정**하였다.

* "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롱잔치, 어린이날, 여름캠프, 성탄절, 부처님 오신 날" 행사로 한정

○ 또한, 보육과정 외의 음악, 체육 등 **어린이집 특별활동**에 대한 **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**하여 **수요와 필요**에 따른 **특별활동 자율성**을 **제고**하였다.

- **시·도지사가**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**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, 어린이집 종류** 등을 고려하여 **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**을 **명시**하여 **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**할 수 있게 하였다.

〈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〉

○ **보육서비스 질 제고**를 위해 **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**하였다.

- **0~2세반 보육료** 중 **부모보육료는 3% 인상**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,000원에서 월 514,000원으로, 민간·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**기관보육료는 5% 인상**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,000원에서 월 599,000원으로 인상된다.

- **장애아보육료**는 **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% 인상**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,000원에서 월 559,000원으로, 기관보육료는 월 622,000원에서 월 653,000원으로 인상된다.

○ **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**임을 고려하여 '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' 에만 **조리원 인건비**를 지원하던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기준을 완화하여 내년도부터는 **‘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’ 지원**한다.

- 또한, 현행 **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**인 **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**에 대해서는 **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**에는 **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**하였다.

○ **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**하였다.

-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‘이용건수, 이용아동수, 이용시간의 **세 가지 조건*을 모두 충족**’ 한 경우 인건비·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**‘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’로 개정**하여 **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**하였다.

* ① 이용건수 30건 이상, ② 이용 아동 수 4명 이상, ③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 시 100% 지원(실적에 따라 70% 차등지원)

□ **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**은 “이번 ‘2023년도 보육사업안내’ 개정을 통해 **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**과 **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**을 위한 **관련 지침 내용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**한다” 라고 밝혔다.

○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)

<붙임>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붙임 **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**

□ 주요 개정 사항

1)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

○ **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행사비 수납기준 개선**('23.3.1. 시행)

- (현행) **보호자로부터 수납 가능**한 **행사비 항목을 한정 · 나열**(9개 항목)하는 방식*으로 부모 수요 등을 고려한 **프로그램 운영에 일부 제약**

  * "입학, 졸업, 연말, 생일, 재롱잔치, 어린이날, 여름캠프, 성탄절, 부처님 오신 날" 행사로 한정

- (개정) **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자율성 부여**하되, 부모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**연 12회 이내 행사로 제한**

○ **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설정 기준 유연화**('23.3.1. 시행)

- (현행) **시 · 도지사**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로부터 수납가능한 **한도액 설정**하고, **국공립어린이집은 타 유형보다 낮게 설정 가능**

- (개정) **시 · 도지사**가 특별활동 수납한도액 설정 시 **연령, 수요,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달리 설정**할 수 있음을 **명시**하여, 영유아 발달단계에 도움이 되는 **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촉진**

○ **연령혼합 반편성 기준 조정**('23.1.1. 시행)

- (현행) **민간 · 가정어린이집**은 인근 어린이집의 정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령별 반편성이 어려운 경우, **시 · 군 · 구 사전 승인**을 받아 **만2세반과 만3세반 아동의 혼합 보육** 가능

- (개정) **혼합반 편성시 학부모 의견수렴**을 거치도록 하고, 현행 기관 보육료 지원시설(민간, 가정)에만 허용한 만2세반과 만3세반 아동의 혼합 보육을 **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**하여 **보육공백 방지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2)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

○ **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('23.1.1. 시행)**

- (현행) **어린이집 평가결과 'B등급 이상'**일 경우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**인건비 지원 기간에 공백 발생 가능**

- (개정) 조리원은 어린이집 **운영 필수인력**이므로, **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개원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**(별도채용 1인에 한하여 100% 지원)

○ **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상향 조정('23.1.1. 시행)**

- (현행) 조리원 인건비 지원 **상한 연령을 만60세**로 규정하고, **농어촌 등 취약지역**에 한하여 **만65세까지** 인건비 **지원 가능**

- (개정) **만60세 초과** 조리원의 **대체인력 공개모집(2회 이상)**에도 **응시자가 없는 경우,** 인건비 지원 **상한을 65세로** 조정하여 **안정적 급식 제공 지원**

  * 조리원 인건비 만65세 지원 : (현행) 농어촌 어린이집→(개정) **채용 응시자가 없는 경우 모든 어린이집**

○ **시간제보육 운영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('23.3.1. 시행)**

- (현행) 시간제보육 기관이 **'이용건수, 이용아동수** 등 **세 가지 조건*을 모두 충족'**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

  * ① 이용건수 30건 이상, ② 이용 아동 수 4명 이상, ③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 시 100% 지원(실적에 따라 70% 차등지원)

- (개정) 세 가지 조건 중 **두 가지 이상 충족시** 인건비와 운영비를 **지원**하여 **시간제보육서비스**의 **안정적 제공 여건 마련**

○ **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 제한 기간 명시**('22.10월 기시행)

- (현행) **아동학대** 또는 **부정수급**으로 **운영정지 6개월** 이상 **행정처분**을 받은 시설은 인건비 지원 중단하나, **지원 재개 여부 미규정**으로 현장 혼란

- (개정) **지원 중단 기간**을 '**운영정지 행정처분 기간**'으로 **명시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3)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

○ **대체교사 지원사유·일수 확대('23.1.1. 시행)**

- (현행) 보육교사의 **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긴급한 사유** 발생시 **대체교사 지원**하여 **보육공백 방지**

  * 지원사유별 지원 최대일수 규정, 보육교직원의 연가사용의 경우 최대 10일

- (개정) 긴급한 사유에 **'보육교사 퇴직'**을 추가하여 대체교사를 **지원(최대 5일)**하고, 보육교직원 연가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(10일→15일)하여 **보육서비스 안정성 제고**

○ **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('23.1.1. 시행)**

- (현행) 국가와 지자체는 **보육교직원 권익 보호**를 위해 **노력**하여야 함을 **선언적으로 규정**하고 있어 **실효성 미비**(영유아보육법 제4조)

- (개정) 지자체별로 **"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" 제정**을 **권고**하여 **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도모**

4)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

○ 0~2세반 보육료(부모보육료 3%, 기관보육료 5% 인상), 장애아보육료(부모보육료 · 기관보육료 각 5% 인상) 반영**('23.1.1. 시행)**

< 보육료 단가 > (단위: 천원/월)

구분	0~2세 보육료				장애아보육료(만12세 이하)			
	부모보육료		기관보육료		부모보육료		기관보육료	
	2022	2023(+3%)	2022	2023(+5%)	2022	2023(+5%)	2022	2023(+5%)
0세반	499	514	570	599	532	559	622	653
1세반	439	452	310	326				
2세반	364	375	210	221				

* 3~5세반 : 280천원('22년과 동일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